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8
----------	-----

2023년 6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30일, 남궁역 의원 외 3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궁역 의원]

가. 제안이유

- 세계의 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 폭우, 미세먼지 발생 등 자연재해에 대응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도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음. 서울의 공간 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이 필요한 시점임.

-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진흥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1) 용어를 추가 정의함(안 제2조).
- 2)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 3) 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4)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5) 국가정원 신청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6)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을 환경도시와 녹색도시로 전환하고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개편하기 위해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시행)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의 정원문화 및 진흥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5조제3항은 시민의 활동을 통해 정원문화의 육성과 확산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정원도시 조성 정책 추진 시 관 주도 일변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조성, 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사, 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이끌어 내는 기획이 필요할 것임.
- 안 제7조제2항은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6조에서 산림청장이 수립한 ‘수목원·정원 조성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수목원·정원 조성진흥실시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에 근거하고 있음.

동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¹⁾’을 수립·시행하지는 않았음.

최근 ‘정원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원도시가 언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에서 기본방향, 현황,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1조는 지방정원²⁾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의 정원 문화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정원을 조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정책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12조는 국가정원 지정 신청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조성·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법 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참고로 동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의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수목원·정원 조성진흥실시계획, 수목원 조성진흥실시계획, 정원 조성진흥실시계획 등

2)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의”를 “서울특별시의”로, “이바지 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

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을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로, “마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원문화활동”을 “정원문화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을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위하여”를 “높이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심내에 시민”을 “시민”으로, “조성하는데 힘써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중 “정원법 제18조의6”을 “법 제18조의6제3항”으로, “서울시내”를 “서울시 내”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정원박람회”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심내”를 “도심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국가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가 조성·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제18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정원박람회

제19조(중전의 제17조) 중 “시민 참여적이고”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제2항 중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공정성·객관성”으로,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내부평가”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중전의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정원
문화의 확산을 위해 -----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심내에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
----- 정원문화 활동-----

② -----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 높이기 위하여-----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
-- 시민 -----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

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
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서울
시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신 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
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
법 제18조의6제3항-----서울
시 내-----
-----.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
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

<신 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신 설>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

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정원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가 조성·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제13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

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 제15조 (생략)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생략)

-- 지역 내-----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 도심 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8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

-----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신 설>

제2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제22조 (생략)

<삭 제>

제6장 보칙

제22조(포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23조·제24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